표준근로 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하 "운영 주체"라 함)과(와) 최안나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근로기준법 제 17조 이행)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4년 11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2. 근 무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4길 17, 3층 306~309호(센트럴테라스)
- 3. 업무의 내용 :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반사항 (사업, 행정, 사무 등 총괄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4. 소정근로시간 : <u>9 시 00</u> 분부터 <u>18 시 00</u> 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 휴게 시간은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근무일/휴일 : 주_5_일(또는 매일 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 6. 임 금
 - "근로자"의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구 분			지급액	비고
월 통상 임금	기본급		3,360,700원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140,000원	인건비 지급기준(원장,관장급 6호봉)
	기타수당 (센터별 지급하는 고정적 수당으로 명칭 변경)		45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209시간
제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발생 시 익월 지급	시간급 통상임금 X 실 근무 시간X0.5 시간급 통상임금 X 실 근무 시간X1.5 시간급 통상임금 X 실 근무 시간X1.5
	가족수당		원	변동 시 변동 지급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연2회(설, 추석) 60%씩
월(평균) 급여 총액			3,960,700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로수당 별도

- 입사자는 수습기간을 _3_개월 적용한다.
- 급여의 인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의 호봉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임금지급일 : 임금 산정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31일까지로하며 임금지급일 은 매월 _25_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한다.
- 지급방법 : "근로자"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금의 실 지급액은 보수 총액에서 세금 및 사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9. 퇴사 및 급품청산
 -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임금 및 퇴직금 외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는 퇴사 시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결재를 특한것에는 이를 제기하지 않고 분쟁을 야기 하지 않는다.
-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밀유지
 - "근로자"는 업무상 취득한 업무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운영 주체" 의 허락없이 문서 등을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기관의 제반 물품 및 시설, 또는 본인이 취득한 시설의 지적재산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기 타

-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센터장 임명을 위해 "운영 주체"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는 조건임을 명시한다.
- "운영 주체"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세종지부"를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 운영관리 주체로 위탁하고, "근로자 "는 위탁 운영(세종지부) 협약에 따라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에 소속되며, 근로자 신고 등의 등록 및 센터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4년 11월 01일

(운영 주체) 사업체명 :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화 : 02-3437-8700)

주 소 : 서울시 성동 교 성수일로4길 25 코오롱디지털타워 1차 413호

대 표 자 : 이상욱

(근로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바탕길 13

연 락 처 : 010-8458-5879

성 명:최안나 최안나